

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」
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☐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상 “문화시민도시”라는 용어가
“문화도시”로 개정되었음에도,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들에서
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☐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
육성 및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,
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
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
로 총 5개입니다.

- ☐ 이에 조례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위 5개 조례상의 “문화시민도시”를 “문화도시”로 개정하고자 합니다.
- ☐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상에 쓰인 “문화시민도시”를 “문화도시”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- 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☐ 감사합니다.